

광주지방법원 2024. 5. 21 선고 2023가단13669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피 고 주식회사 D

변 론 종 결 2024. 5. 7.

판 결 선 고 2024. 5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327.02㎡를 인도하고,

나. 각 7,109,623원과 2023. 12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3층 327.02㎡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481,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김정철

별지